

# 稅務管理에 더욱 신경을 쓰자.

윤석인

<삼성사료 경리부>

■ 국가가 일단 부담해야 할 과세의무를 지워준 이상 이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합리세정의 일익을 도모하는 뜻에서도 정당한■기장과 회계처리로서 사업이익을 위한 절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편집자>■

작금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대체적으로 농가부업적인 소규모 영세성과 후진성을 탈피치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해 오다가 정부의 장기적인 축산업 장려책과 기술지도 및 세제상의 축산업 감면이란 특혜에 힘입어 양축가들의 배전의 노력과 인내로 서서히 자립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 축산업자들도 좀 더 과학적이고 기업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타기업에 못지 않은 기틀을 잡을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된다. 차제에 우리가 등한시했던 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일정기간의 손익을 계산하는 기업회계면에 원시안적인 안목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으며 또한 축산업 감면이란 세제상의 특혜로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세무회계면에도 방위세법이란 국민계납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면세되는 경우에도 극히 한정된 범위(수출용원자재 및 외차도입법에 의한 면세자본재 등) 내에서의 비과세를 허용하는 이외에는 전면세소득과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과세하게 되어있는 새로운 법이 지난 7월 16일자로 공포, 시행하고 있으며 소득세에 대해서는 1975년에서 1980년의 발생소득 법인세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사업년도가 종료한 분에 대한 소득, 상속세, 등록세, 주세, 물품세, 입장세, 전화사용

료, 광고료, 유홍음식세, 마권세에 대한 방위세는 시행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발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농지에 대한분은 시행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납기분의 방위세를 시한부로 과세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세법 제 4조(파세표준과세율)를 보면 ① 방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동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하였으며 그 중 축산업자와 밀접한 조항을 추려보면 제 2호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은 백분의 이십, 다만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월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백분의 이십으로 한다고 했으며 제 3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백분의 이십, 다만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백분의 이십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 제 9호에는 전화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가 부과되는 전화사용료는 백분의 십이고, 제 12호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백분의 이십이며, 제 16호에 전답 임야의 가액(지방세법 제 111조 제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식기표준액을 말한다)의 백분의 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 2항을 살펴보면 제 2조 제 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비과세 감면업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

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됨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됨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의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 순이익으로 한다. 또한 동법 제 5 조(신고와 납부)를 보면 방위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 납부(납입 및 중간예납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과같이 축산업자도 신고 납부하여야 할 방위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거니와 국가가 일단 부담해야할 과세의무를 지켜준 이상 이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합리세정의 일익을 도모하는 뜻에서도 정당한 기장과 회계처리로서 사업이익을 위한 절세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방위세법 제 4 조 2 항에 명시된 비과세 감면업체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인세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으로 한다고 봇박은 이상 축산업자 제위께서도 이제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 정규부기의 기장으로 세무당국에 인정받을만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시기가 도래 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무를 부여한 이상 이행치 않았을 경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백분의 이십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방위세를 징수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방위세를 포함한 자는 관세법의 처벌규정에 따르며, 그 외에의 방위세 포함자는 조세법 처벌규정에 준한다는 법칙규정이 강화되어 있다. 옛 속담에 “첫순 갈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듯이 세무처의 문

제가 어디까지나 충분한 경리기술을 습득한 자가 아니고서는 일조일석에 해결되리라고는 믿지 않으나, 한가지 한가지 손수 몸에 익혀 나간다면 생각처럼 그리 난해한 일도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 전혀 경험이 없으신 축산업자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근간이 되는 부기의 원리에 대해 잠간 고찰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부기라 함은 하나의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재산의 여러 구성부분이 가지는 가치의 증감 변화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 계산 정리하여 그 결과를 밝히는 하나의 계수상의 계산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경제주체가 하나의企業형태인가 아닌가에 따라 기업부기 또는 비영리 부기로 나눌 수 있고, 기업부기는 다시 사업내용에 따라 상업부기(판매업), 공업부기(제조업) 또는 은행부기(금융업)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부기를 이용하는 주체의 거래행태나 분량에 따라 조직체계나 처리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며, 여기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개관적인 개념에서의 부기라함은 기업에서의 복식부기를 통상 지칭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년간 외형금액이 2억원 이상(운송보관업종 보관업과 서비스업 종 도급 대리 중계 위탁판매 운송주선의 영업은 5천만원)자의 영업자에게는 복식기장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법인세에 의하여 설립한 전 법인에게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란에는 복식부기의 원리를 연구할까 한다. 복식부기란 일정한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대변, 차변을 가지는(대차평균의 원리) 특수형식에 의하여 하나의 거래를 이중기록(거래의 이중성)을 하게 되므로 각 계정간에 항상 상호 관련성을 가지게 되고 투자자산의 증감변동이 빠짐없이 기록되게 되어 이로 인하여 재정상태의 시점파악이나 일정기간의 경영성과 계산이 정확하게 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오류가 검출되게 되어 하나의 내적인 검사기능을 갖게 되는 가장 완전한 부기체계를 말한다. 그러면 복식부기의 장부조직 형태를 간단히 살펴보면 장부의 종

류를 크게 나누어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하며 주요부에는 총계정원장 일계도 전표(현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임금전표, 대체출금전표)가 있으며, 보조부에는 자산보조부(금전출납부, 제예금원장, 외상매출장, 상품수불부, 고정자산대장, 가지급금장, 받을어음장 등)부채 및 자본 보조부(지급어음장, 외상매입원장, 차입금원장, 가수금장, 예수금장 등) 손익 보조부(매출원장,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장 매출원가장 등)로 설정한다. 이상과 같이 장부가 분류 설정되면 거래의 발생시점마다 증빙서에 의한 원시기록을 토대로 전표를 작성하여 매일매일 계정과목별로 기장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초심자로서 유의할 것은 부기에서의 거래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변화를 이르키게 하는 일체의 사항을 통칭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의 동액 증감인 양면적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며 거래의 요소는 크게 나누어 8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곧 이를 거래의 8요소라고 하며 이와 같은 거래요소를 완전히 파악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복식부기의 원리를 터득한 것으로 보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래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으며, 독자 제현께서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②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③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④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⑤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⑥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⑦ 비용(손비)의 발생은 차변에 ⑧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이상과 같은 거래의 제요소의 차변과 대변을 분리하는 하나의 공식으로 암기해 두시고 실지 기표에 임하실 때 분개를 한다면 어떠한 회계처리라도 능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상과 같이 기표가 되어 보조부에 기장이 완료되면 하루의 총 발생전표를 계정과목별 현금입금전표, 현금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대체출금전표로 구분하여 집계한 후 일계표를 작성하게 되면 작성된 일계표는 즉시 총계정원장에 기장하게 된다. 이렇게 일연으로 발생되는 제거래를 매일매일 정리기장하여 매월말에 총계정원장과 보조부를 마감하여 월말시산표를 만들어 장부의 오류를 발견 수정하고 대차대조표와 월차손익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기업내의 재정상태나 운영자금상황을 파악하고 기간 손익을 산출하여 기업경영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으며 제반 경영계획을 세우는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1회계년도말에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기말 시산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해서 결산에 임하게 되며 재무제표 규칙에 의한 결산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잉여금계산서, 잉여금처분제산서, 각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신고 조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지면의 허락함이 없어 이상 간단하게 마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독자 재현께서 본고를 통하여 다소나마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심과 열의를 기울여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신다면 필자의 출서는 더없는 보람을 느끼며 맛을까 한다. ■

## 移轉案內

大新飼料(株)會社 서울事務所

移轉場所 : 서울 종구 을지로 6가 18의 67

신판펠딩(新豌) 310號室

※ 전화는 변동 없음 (25) 1487, 7268

서울사무소장 柳漢基 拜